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55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이종배·강선영·김상훈

김성원 • 엄태영 • 박대출

조승환 · 성일종 · 박덕흠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죄를 범한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제59조 중 "15년"을 "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 | |
|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고) ① | | |
|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 | | |
|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 | |
| <u>1. 죄를 범한 소년</u> | 1. 죄를 범한 소년(「특정강력 | | |
| |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 |
| |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 | |
| | 소년은 제외한다) |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 | |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 | |
|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 | | | |
| 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 | | |
| <u>15년</u> 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u>25년</u> | | |